포항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활성화 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6년 3월 23일 포항시장

나. 회부일자 : 2026년 3월 23일

다. 상정일자

❍ 제329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2026. 4. 3.)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정현정 바이오미래산업과장)

가. 제안이유

❍ 해당 사업의 체계적·효율적·전문적 수행을 위해 다년간 사업추진에 따른 축적된 경험과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각종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역혁신거점기관인 (재)포항테크노파크에 위탁(재계약)하여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내 기업지원 및 협업체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산업구조 다변화 및 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포항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유망기업을 지원하여 혁신 기술창업 생태계 조성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 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과 네트워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다. 제안근거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의회 동의)

❍「포항시 재단법인포항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6조

라.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포항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활성화 사업

❍ 위탁(대행)사무 추진 근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5
-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4조

❍ 위탁(대행)사무 추진 필요성

- 대기업 종속 산업구조 및 지역주력산업 침체 지속에 따른 산업구조 체질개선 및 기업 혁신역량 강화 필요
- Bio, AI, ICT/SW 등 미래 신산업 기반 성장유망기업 유치를 통한 혁신 기술창업 생태계 조성 및 일자리 창출 필요

❍ 위탁·대행 사무 내용: 포항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입주기업 지원

- 기　　간 : 2026. ~ 2030.
- 대　　상 : 포항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효곡동 일원) 내 입주기업
- 규　　모 : 22개사 내외(기업지원사업 참여기업)
- 사 업 비 : 1,485백만원 (도 450, 시 1,035 / 연 297백만원)
- 사업내용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입주기업 지원 및 협업체계 활성화
  - 우수 아이디어 신속 사업화 및 공공조달시장 진입 경쟁력 강화 지원
  - 산학연 기술교류 네트워크 활성화 및 창업벤처기업 투자촉진 프로그램 지원

❍ 위탁기간 : 2026. 4. ~ 2030. 12.

❍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비고
포항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활성화 사업	직접지원사업 (맞춤형 기업지원사업)	200	200	200	200	200	
	연계지원사업 (IR 행사운영)	10	10	10	10	10	
	사업추진비 (인건비, 홍보비 등)	57	57	57	57	57	
	일반운영비 (여비 등)	30	30	30	30	30	
	소계	297	297	297	297	297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장준호)

❍ 본 동의안은 “포항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활성화 사업”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인 (재)포항테크노파크와 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본 사업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기업의 기술사업화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해 지역 벤처생태계 조성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되며, 수탁기관의 전문성 및 사업 수행 경험을 고려할 때 위탁 추진의 타당성 또한 인정됨.

❍ 다만, 해당 사업에 대한 조례나 규칙상 명시적인 위탁 근거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은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향후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는 개별 사업에 대한 위탁 근거를 조례 제·개정을 통해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의 요지 : 생 략

5. 토론의 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